

## 「2024년도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공고

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의 단계적 향상을 위한 「2024년도 기술보호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」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1일  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### 1. 사업 개요

#### □ 사업목적

-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·수요에 맞춰 바우처를 지원하고 보호역량이 성장하는 기업에 추가지원하여 선도기업으로 육성

#### □ 모집규모 : 250개사 내외

- \* 기존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(협약) 기업 포함(신청현황에 따라 모집규모 변경 가능)

#### □ 사업기간 : 2024. 3. 1 ~ 2024. 12. 31 (10개월)

- \* 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사업기간 내 수행한 활동만 지원

#### □ 운영기관 :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

### 2. 지원요건 및 규모, 내용

#### □ 지원요건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- \* 기존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(협약) 기업 포함

#### 신청 제외 대상

1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“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”에 적용되는 기술로 판명되는 경우 ([참고] 참조)  
\* 유희·향락업, 숙박·음식업,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
2.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·폐업중인 기업
3.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이거나,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에 해당하는 기업
4.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정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

#### □ 지원규모

-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초보·유망·선도기업 3단계로 구분하여 바우처 한도 및 보조율 차등 적용
- \* 스타트업(창업 7년 이내 기업)은 보조율 10%, 한도 1천만원 추가 지원

< 기술보호 바우처 단계별 지원 >

기술보호 수준	초보기업(1단계)	유망기업(2단계)	선도기업(3단계)
기술보호 수준	45점 미만	45~75점 미만	75점 이상
바우처 한도	30백만원	50백만원	70백만원
정부보조율	+30%(최대 80~90%)	+10%(최대 60~80%)	기본(최대 50~70%)

#### □ 지원내용

- (수준진단) 현장전문가(보안·법률)가 선정기업을 방문하여 기술보호 수준을 정밀진단 후 점수 구간별 5단계로 분류

< 기술보호 수준별 점수 및 상태 >

구분	점수	기술보호 수준 상태	기술보호 단계
I 단계 /우수	75점 이상	기술보호에 대한 결점 및 취약성이 거의 없으며, 기술유출 및 침해사고 발생시 피해가 최소가 되는 상태	선도기업 (3단계)
II 단계 /양호	60점~75점 미만	기술보호에 대해 심각하지 않은 결점 및 취약성을 내포하며, 회사 차원의 기술보호 업무가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	유망기업 (2단계)
III 단계 /보통	45점~60점 미만	기술보호에 대해 결점 및 취약성을 내포하며, 기술의 유출 및 침해 정도에 따라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태	초보기업 (1단계)
IV 단계 /취약	30점~45점 미만	기술보호에 대해 결점 및 취약성을 내포하며, 기술의 유출 및 침해 정도에 따라 치명적인 피해가 가져올수 있는 상태	
V 단계 /위험	30점 미만	기술보호에 대해 심각한 결점 및 취약성을 상존하며, 기술 유출 및 침해 정도에 따라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태	

- (지원분야) 기술보호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까지 기술보호 역량 강화와 대응을 위하여 바우처 한도 내에서 신청·사용

<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프로그램 >

지원분야	지원내용	지원한도
기술 보호 예방	<b>기술보호 컨설팅·교육</b> <b>[ 전문가 현장자문 ]</b> ■ (보안·법률컨설팅) 보안 및 법률 분석과 솔루션 등 제공 ■ (교육)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파견, 임직원 대상(5명 이상) 교육 지원	1,000만원
	<b>보호시스템 구축·운영</b> <b>[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]</b> ■ 기술보호시스템 구축·고도화, 라이선스 구입·갱신, 클라우드 사용, 악성코드·랜섬웨어 SW 구입·사용 비용(보조율 50%, 최대 90%)	7,000만원
	<b>기술자료의 안전한 보관</b> <b>[ 기술자료 임치제도 / 증거지킴이(TTRS) ]</b> ■ 기술자료 임치 또는 거래 과정의 증거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신규·갱신 비용 지원	200만원
	<b>기술보호 정책보험</b> <b>[ 기술보호 정책보험 ]</b> ■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, 영업비밀, 디자인, 실용신안 관련 사건의 법률비용 보장 보험 가입료 지원(보조율 70%, 최대 90%)	1,000만원
기술침해 사후 대응	<b>[ 손해액 산정 등 ]</b> ■ 조정·중재에 소요되는 비용,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디지털 포렌식,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한 대응 비용 지원	1,000만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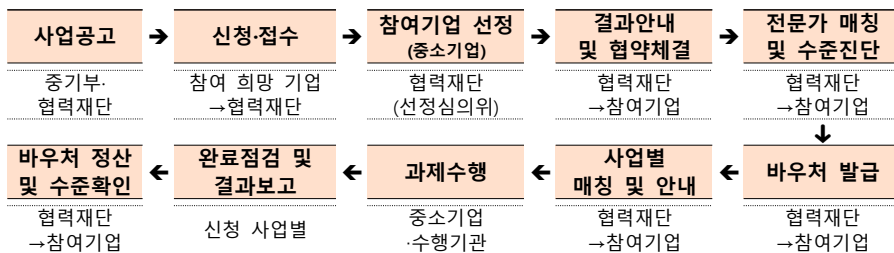
- (후속지원) 매년말 기술보호 수준 재진단을 실시하여 빠르게 향상된 기업은 최대 3년의 기한 내에서 차년도 추가한도 지원

\* 수준점수 15점 이상 상향 시 2천만원, 30점 이상 상향 시 4천만원 추가 지원

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예시

- ▶ (사례①) 최초 진단 '초보' 기업(35점) A사 1년차 3천만원  
→ 2년차 '선도' 기업(75점) 추가 4천만원 지원
- ▶ (사례②) 최초 진단 '유망' 기업(45점) 스타트업 B사 6천만원  
→ 2년차 '유망' 기업(60점) 추가 2천만원 지원  
→ 3년차 '선도' 기업(75점) 추가 2천만원 지원 (총 1억원 한도 부여)

□ 진행절차



3. 신청방법

□ 신청방법

-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(www.ultari.go.kr)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(ltp300@win-win.or.kr) 제출

□ 신청기간 : '23. 3. 1(금) ~ 3. 22(금)

※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

□ 신청서류

구분	제출서류 (PDF 서명본, 한글·word 파일 모두 제출)
1	(신규 참여기업) 기술보호 바우처 사업 신청서 (참고1)
1-1	(선도기업) 기술보호 바우처 사업 신청서 (참고2)
2	기술보호 바우처 사업 추진계획서 (참고3)
3	개인 또는 법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(날인본) (참고4)
4	사업자등록증(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) 및 중소기업확인서(유효기간 내)
5	최근년도 매출액 증빙자료(재무제표)
6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(접수일 기준 유효기간 내)
7	(신규 참여기업) 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 결과(PDF, EXEL 파일) 각 1부**
8	기타 증빙 관련 서류

\* 기존 기술보호 선도기업으로 지정 또는 육성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1-1, 2만 제출

\*\* 가입필수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(www.ultari.go.kr) - 사전예방 - 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

4. 평가 및 선정

□ 평가 및 선정

- 사업 신청서류 검토 후 요건 적합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
- (요건확인)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및 중소기업 여부, 휴·폐업,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등 자격요건 확인

- (평가방법) 평가점수 최고-최저점 제외 후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(동점 발생 시 우선순위\*에 따라 최종선정)

\* ① 우대가점 ②배점이 높은 평가항목 ③기술유출 피해기업 순으로 조정

- (평가항목) 핵심기술 보유 유무,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

평가항목	배점	평가 세부내용
① 핵심기술 보유	35	· 기술개발 현황 및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등
② 지원 필요성	35	· 보유기술의 기술보호 필요성 및 시급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바우처 활용계획의 적절성
③ 기술보호 노력	20	· 기술보호 수준 및 노력
④ 기대효과	10	· 수립계획 및 목표 타당성
우대가점	10	· 창업기업, 혁신형기업, 소부장 강소기업, 방산업체,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,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등 ※ [붙임자료] 우대가점 증빙 제출 별도 안내
계	100	-

□ **가점사항** \* 세부내용 (참고5) 참조

지원우대 대상	가 점	비 고
· 경영혁신형중소기업(MAIN-BIZ) · 벤처인증기업 · 초격차 스타트업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· 방산(물자)업체	· 기술혁신형중소기업(INNO-BIZ) ·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(TIPS) 참여기업 ·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	각 5점
· 기술유출 및 탈취피해기업 · 그린뉴딜 유망기업 · 혁신기업 국가대표1000 ·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	· 소재부품장비산업 100대 선정기업 · 글로벌강소기업 · 창업기업	각 1점
		최대 10점 인정

## 5. 유의사항

-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, 향후 「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」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
- 2024년 기술보호 바우처사업에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지원불가
- 허위사실 기재, 신청서 작성오류,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책임이며, 허위사항이 발생한 경우 운영지침에 따라 제재함
- 동일 법인이라도 기술보호 바우처 사업에 최종 선정된 참여기업이 이용한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 (사업자번호 기준)

\* 예시) 법인 본사로 신청 및 선정 → 본사 이용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,  
지점(혹은 공장)으로 신청 및 선정 → 지점(혹은 공장) 이용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

◆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 및 운영기관별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

## 6. 문의처

□ **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**

- (연락처) 02-368-8922, 418, 763
- (이메일) [lt300@win-win.or.kr](mailto:lt300@win-win.or.kr)

참고 1

기술보호 바우처 사업 참여신청서

(신규참여) 기술보호 바우처 사업 참여신청서

기업현황	회사(업체)명			성명	대표이사명				
	사업자등록번호			연락망	전화번호				
	법인등록번호			설립일자	-	-			
	본사주소	우편번호			대표번호				
				팩스					
	공장주소	우편번호			대표번호				
				팩스					
업종			주생산품						
매출액(단위: 원) * 결산전이면 추정치	'23년	000,000,000,000	종업원수	'23년			기술유출 피해경험	유	<input type="checkbox"/>
	'22년	000,000,000,000		'22년				무	<input type="checkbox"/>
참여이력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술보호 현장자문	'00.0.0	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술지킴서비스	'00.0.0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술보호 정책보험	'00.0.0	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술자료 임치	'00.0.0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법무지원단	'00.0.0	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술유출방지시스템	'00.0.0				
담당자	부서			직위					
	직통번호			휴대폰					
가입경로	<input type="checkbox"/> 온-오프라인 설명회/교육/상담			<input type="checkbox"/> 언론·인터넷 검색	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추천(기관·기업명)		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				
해당유무	<input type="checkbox"/> 혁신형기업(이노·메인·벤처)		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기업	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혁신기업 국가대표(1000사)			<input type="checkbox"/> 글로벌 강소기업	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그린뉴딜 유망기업			<input type="checkbox"/>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	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기업			<input type="checkbox"/> 소부장 강소기업	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창업기업			<input type="checkbox"/> 초격차 스타트업1000 선정기업	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(TIPS) 참여기업		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직접기업)					
필수 첨부서류	1-1. 기술보호 바우처 사업 추진계획서 1부.								
	1-2. 기업 및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(날인본)								
	1-3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								
	1-4.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1부.								
	1-5. 기술보호 자가진단 결과 1부.								
	1-6. 기타 증빙 관련 서류 각 1부.								
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									
2 0 년 월 일									
기업명 대표자 (서명 또는 인)									
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									

참고 2

기술보호 바우처 사업 참여신청서

(선도기업) 기술보호 바우처 사업 참여신청서

\* 기존 기술보호 선도기업으로 지정 또는 육성 협약을 체결한 기업

지원구분	선도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선도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예비선도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
	기술보호단계 <input type="checkbox"/> 우수 <input type="checkbox"/> 양호 <input type="checkbox"/> 보통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약 <input type="checkbox"/> 위험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
사업참여 동의여부	동의여부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
	* 기존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참여 기업에서 기술보호 선도기업 바우처 사업으로의 사업 전환·갱신								
기업현황 (변동시)	회사(업체)명			성명	대표이사명				
	사업자등록번호			연락망	전화번호				
	법인등록번호			설립일자	-	-			
	본사주소	우편번호			대표번호				
				팩스					
	공장주소	우편번호			대표번호				
				팩스					
업종			주생산품						
매출액(단위: 원) * 결산전이면 추정치	'23년	000,000,000,000	종업원수	'23년			기술유출 피해경험	유	<input type="checkbox"/>
	'22년	000,000,000,000		'22년				무	<input type="checkbox"/>
담당자(1)	부서			직위					
	직통번호			휴대폰					
담당자(2) (필요시)	부서			직위					
	직통번호			휴대폰					
필수 첨부서류	1-1. 기술보호 바우처 사업 추진계획서 1부.								
	1-2. (필요시) 기타 증빙 관련 서류 각 1부.								
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									
2 0 년 월 일									
기업명 대표자 (서명 또는 인)									
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									

**참고 3**

**기술보호 바우처 사업 추진계획서**

보유 핵심기술

기술보호 활동 현황

-  
(예시) 핵심기술 사전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기술보호 전문가의 보안진단과 반기별 직원 교육, 핵심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000장비 구입·활용 등)

- 정부/기관/지자체의 기술보호지원사업 참여이력

지원사업명	지원기관	참여년도

기술보호 관련 애로사항/문제점 (해당없을 시 '해당없음')

-  
- 기술탈취 및 유출피해경험(최근 5년 이내)

추진방향과 목표

< 희망하는 바우처 지원사업(필수 선택, 복수선택 가능) >

구분	사업명	활용목적 및 내용				
		분야	내용	일반	해외연계	고도화
<input type="checkbox"/>	기술보호 현장자문	분야	내용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<input type="checkbox"/>	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	분야	구축내용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<input type="checkbox"/>	기술자료임치	임치건수				
<input type="checkbox"/>	기술보호 정책보험	보험물				
<input type="checkbox"/>	기술지킴서비스	희망서비스				
<input type="checkbox"/>	기술침해 손해액 산정	내용				
<input type="checkbox"/>	기타	사업명				

\* 개별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며, 적합성 검증을 통해 바우처 부여하여 수요와 상이할 수 있음

**참고 4**

**기업 및 개인(신용) 정보 수집·이용 제공 동의서**

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(이하 “협력재단”이라 한다)에서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 제1항 제1호, 제17조 제1항 제1호, 제23조 제1호 따라 기술보호 선도기업 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사(하)의 정보를 수집·제공하고자 합니다.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내용
수집·이용 제공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업명, 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, 설립년월일, 본점·영업소 등의 소재지, 설립연월일, 연락처(주소, 전자우편주소, 전화번호 등), 사업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(신용거래)정보, 신용도판단정보(연체, 부도 등), 신용능력정보, 재무상황, 고용에 관한 내역, 기타 신용정보(국세 등 체납정보), 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 서류 등에 기재된 기업(신용)정보 등 신청 시 제출한 모든 자료 포함</li> </ul>
보유·이용 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의 경과,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의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시 지체없이 파기 * 다만,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제외</li> </ul>
개인정보 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공대상 : 총괄기관(중소벤처기업부) 및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자</li> <li>제공목적 : 사전컨설팅, 수준확인 심사, 지원사업 연계 및 행사·설명회 안내 등 현장컨설팅</li> <li>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: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다</li> </ul>

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제공하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?     동의함     동의하지 않음   

※ 귀사(하)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**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(SIMS) 정보활용 동의**

-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(신청 및 지원) 기업정보의 수집·조회 및 활용
  -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(국세 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), 고용정보(고용보험법 제2조의1), 직장가입자 수(국민건강보험법 제6조) 등
  -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(집행기관 포함),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에서 조회·활용
  -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
- ※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,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 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

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제공하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?     동의함     동의하지 않음   

※ 귀사(하)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0    년    월    일

기업명		대표자		(인)
사업자등록번호	-	연락처	(    )	-

**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**

**참고 5**

**우대가점 제출서류**

**우대가점 제출서류(최대 10점)**

분야	우대사항	가점	증빙서류
일 반	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기업	1점	피해사실 입증공문 또는 기타 입증가능 서류
	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23조 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	1점	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서(정부24)
	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」 제5조제1항8호에 따르는 환경산업체 및 이노비즈, 벤처기업,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중 1개 이상 해당 하는 중소기업에 따르는 “그린뉴딜 유망기업”	1점	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서
	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로부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유효한 기업	1점	글로벌강소기업 지정서
	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18조의2(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),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(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), 제18조(세계적 유망기업 육성),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0조(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)에 따르는 혁신기업	1점	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인증서
	「방위사업법」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르는 방산물자에 대한 방산업체로 지정된 기업	5점	방산업체 지정서
	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14조의3,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5에 따라산업기술(국가핵심기술에 해당)을 확인받은 기업	5점	산업기술(국가핵심기술)확인서
	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 2에 따르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	1점	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
혁신형	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	5점	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
	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	5점	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
	「벤처기업법」 제2조의2 1항의 2호의 가목에 따르는 벤처인증기업	5점	벤처기업 확인서
창업기업	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	1점	창업기업 확인서 등
	초격차 스타트업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	5점	참여 협약서
	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(TIPS) 참여기업	5점	참여 협약서